

1. 개정이유

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기간을 연장하고 주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·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혼잡통행료 부과기간 연장(안 제3조)

- 1) 혼잡통행료 미납 시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, 기간이 짧아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.
- 2) 현행 납부기간은 15일이나 이를 30일로 연장하여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.

나. 신탁자의 위탁자 정보제출 의무 규정(안 제4조의2)

- 1) 신탁재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위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나,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가 신탁자로 되어있어 부과관청이 위탁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음.
- 2) 이에 따라 부과관청이 위탁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자에게 정보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.

다. 시설물 소유자 정보 확인 근거 규정(안 제6조)

- 1)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으

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데, 부과관청이 소유자 정보 및 시설물의 주거용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.

- 2) 부과관청이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구축·운용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,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라. 교통유발계수 조정(안 별표 4)

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, 전통시장, 중고차 전시시설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사전검토 결과 교통유발부담

금 납부 관련 정보 세부내용에 대해 규제
심사 ‘대상’ 통보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15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정보 요청) 시장이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그 정보를 작성하여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영 제25조제1항”을 “영 제25조제1항 전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)를 확인할 수 있다.

별표 4의 제6호 숙박시설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	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, 가족호텔, 휴양 콘도미니엄	1.64	1.40	1.14	0.77
---	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

별표 4의 제7호 판매시설란 나목의 세분류란 중 “대규모 점포”를 “대규모 점포(같은 법 별표 제6호의 ‘그 밖의 대규모 점포’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란 다목의 세분류란 중 “그 밖의”를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,”로 한다.

별표 4의 제14호 자동차 관련시설란의 나목 다음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	중고차 매매장의 전시시설	0.43	0.34	0.30	0.30
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

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혼잡통행료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정보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신탁재산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현황

신탁재산 주소지(건물명)											
①위탁자 정보						②신탁재산 현황					
③연번	④성명 (법인명)	⑤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⑥주소	⑦연락처	⑧지분률	⑨주소	⑩용도		⑪건축 연면적	⑫계약 기간	⑬신탁 목적
							공부	사실			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현황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도 안내 및 작성방법

□ 제도 안내

- 교통유발부담금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(건축물 등)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.
- 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납부의무자이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위탁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수탁자는 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.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23조제5항 및 제6항)
- 작성대상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한 건축물에 한정합니다.

□ 작성방법

- ① 위탁자 정보: 신탁계약 시 위탁자 정보를 적는 란입니다.
- ② 신탁재산 현황: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현황을 적는 란입니다. 동일한 위탁자가 하나의 시설물 내에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다음 행에 적습니다.
- ③ 연번: 하나의 위탁자에 하나의 연번을 1부터 부여합니다(해당 시설물의 위탁자가 공동명의인 경우도 그 수만큼 연번을 부여).
- ④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⑤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⑥ 주소: 신탁계약 상 위탁자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그 주소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⑦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- ⑧ 지분률: 신탁재산이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지분률을 적습니다.
- ⑨ 주소: 신탁재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.
- ⑩ 용도: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⑪ 건축연면적: 신탁재산에 대한 건축연면적(㎡)을 적습니다.
- ⑫ 계약기간: 해당 신탁재산의 계약기간을 연, 월, 일까지 적습니다.
- ⑬ 신탁목적: 관리신탁, 처분신탁, 개발신탁, 담보신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□ 문의처

-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·군·구 과(☎ -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”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 30일-----. <u>제4조의2(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정보 요청) 시장이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그 정보를 작성하여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6조(납부고지서)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 <u><신 설></u>	제6조(납부고지서) ① 영 제25조제1항 전단----- -----. ② 영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

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)를 확인할 수 있다.